



HUG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 모집 공고 [2026.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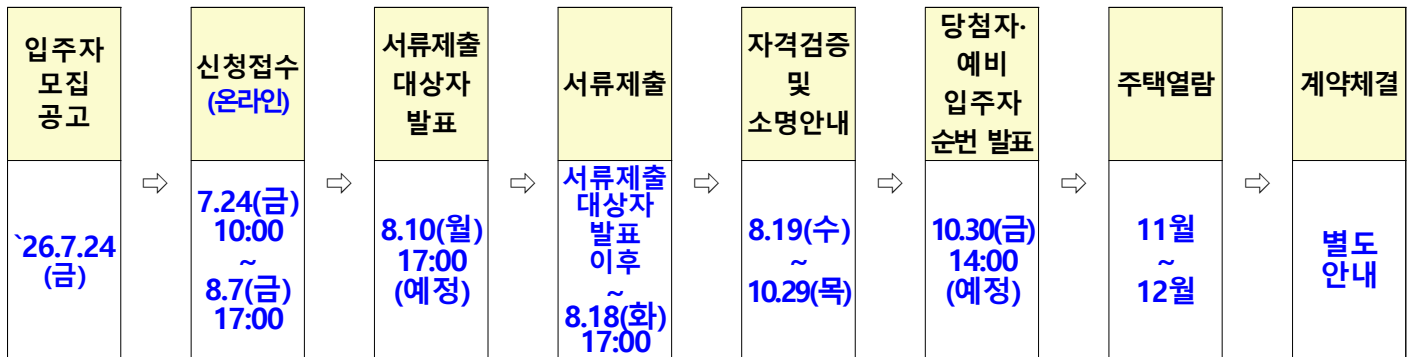
-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주거용)아파트를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 및 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7.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합니다.
 -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3p 참고).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1세대당 1개의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세대구성원 구성)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민법상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 여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기준 3p 참고)
- (신청방법) 본 공고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 발표되는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로 모집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2배수)
- (공급방법)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된 신청주택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으로 한정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마감일 이후 입주신청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공고 신청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유형)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경매 또는 파산 절차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매입하는 '경매 등 매입형'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하는 '협의매입형'으로 분류됩니다.
 -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후 서류제출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을 진행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등 서류미비 또는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제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공고 신청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주택열람 후 별도 통지된 기한까지 계약의사 표시가 없을시 당첨이 취소되고 차순위 당첨자에게 주택 열람 및 계약기회가 제공됩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300호

• 매입유형,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HUG 안심전세포털 ⇒ 든든전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1배수+예비입주자 1배수 이내 선정 (서류제출대상자 2배수 모두 부적격자 발생시 추후 공고에 재공급)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3회까지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u>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u>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u>임대인이 변경</u>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의 경우 HUG가 아니라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관리주체)등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는 HUG에서 정한 주택관리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규모 수선의 하자는 HUG가 부담하나, 소규모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7.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민법상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 여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대구성원 예시 참조)

■ 세대구성원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구 분	비고
• 입주신청자	-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 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7.24(금) 10:00 ~ 8.7(금) 17:00	- 입주신청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PC) 접수는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신청마감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10(월) 17:00 (예정)	서류제출대상자는 'HUG안심전세포털(든든전세주택→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이후 ~ 8.18(화) 17:00	-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등 서류미비시 당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공고 신청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임박시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 입주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등 자격검증을 진행합니다. -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발표	10.30(금) 14:00 (예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HUG안심전세포털(든든전세주택→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열람 (확인)	11월 ~ 12월 (예정)	- 주택열람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별도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관련 안내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격 등 관련하여 9~10p 유의사항 참고

* 상기 일정은 주택소유 여부 등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결과 확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①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주택별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
- ③ 주택별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입주신청 버튼 클릭 후 입주자격 자가진단
- ④ 휴대폰 인증 로그인
- ⑤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 ⑥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 필요사항 동의
- ⑦ 신청 완료

※ 신청은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며, 마감시간까지 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후 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 페이지에서 신청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신청 기간동안 신청내역 변경,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26.7.24)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HUG 안심전세포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정자 자필)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로 발급)	

* 세대 구성원 기준 3p 참고

* 자격검증 등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아래의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하여 제출
 -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제출 (* 사진촬영 업로드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 촬영보다는 스캔본으로 접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제출

✓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뒤 한 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PDF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서류 작성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정자로 자필 서명(성명 정자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작성예
김허그	123456 - 7890123	본인	김허그	O
김허그	123456 - 7890123	본인	KIM	X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정자로 자필 서명(성명 정자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작성예
		휴대전화번호										
본인	김허그	1	2	3	4	5	6	-	김허그	김허그	O	
		7	8	9	0	1	2	3				
		0	1	0	1	1	1	1				1
본인	김허그	1	2	3	4	5	6	-	KIM	KIM	X	
		7	8	9	0	1	2	3				
		0	1	0	1	1	1	1				1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신청 (인터넷)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입주신청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입주신청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입주신청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세부정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주택열람	•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을 진행하며, 주택 열람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평면도 등 세부정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열람시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계약체결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 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자격검증 및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미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으로 한정하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기한 내 계약의사 미표시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계약기간 등)은 수정·반복이 어려우니 계약시 유의하여 신중하게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등 자격)	• 입주신청인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도시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환 완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든든전세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에는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타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및 세대구성원이 든든전세주택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든든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며 즉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든든전세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신청자 및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이전 모집공고에서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외) 또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제한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일 당일 잔금납부 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공사에 청소업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만 입주일 당일 잔금납부 전이라도 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오전 9시부터 입주청소가 가능합니다. - 잔금납부 전 임차인의 짐 반입,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등은 불가하며, 입주청소 중 주택, 물품 등의 파손,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HUG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 후 30일 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기본옵션 빌트인 가전(시스템 에어컨, 세탁기·건조기, 냉장고에 한함)의 하자에 대하여 HUG에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HUG는 확인 후에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0일 경과 후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관련 비용은 HUG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사육은 해당 주택의 관리업체 방침에 따르며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및 하자(도배,장판,시설물 파손 및 냄새 등) 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일체의 책임 및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잦은 민원 발생시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HUG 및 주택위탁관리업체는 계약기간 중 하자 보수 확인 및 주택 전대 및 양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든든전세주택 내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주택 임차 실태 확인 및 임차인의 전대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 진행 예정으로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평일 9~18시 조사원 방문 예정, 추후 별도 안내)
기타 유의사항	•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받거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는 경우 원상복구 공사 실시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반건축물 지정 등이 ‘임대차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복구 공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동안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시주거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명도일(계약종료)이 비영업일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비영업일 전 영업일에 임대보증금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 기재되어있는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 이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입주자격 관련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HUG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HUG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처

☎ HUG 콜센터 전화번호 1566-9009 (평일 09:00~18:00)

☎ HUG 든든전세주택 위탁관리업체 전화번호 032-323-4851 (평일 09:00~18:00)

2026. 7. 24.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HUG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유'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주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입자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입주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주택 보유 현황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입주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입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입주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입주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내역	
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본인의 입주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주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신청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붙임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본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